

제334회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6월16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5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98.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병석·김기준·박민수·강기정·이원욱·정세균·홍익표·은수미·김성주·이미경·임수경·박주선·권성동 의원 발의) 6
8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황영철·김종태·송영근·홍철호·주영순·최봉홍·권성동·배덕광·문대성 의원 발의) 6
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최원식·은수미·진성준·김용익·김진표·원혜영·한정애·추미애·배기운·이찬열·장하나·최민희·한명숙·진선미·임수경·전순옥·김재운·박남춘·안규백·남인순 의원 발의) 6
8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이개호·부좌현·홍의락·박남춘·주승용·김기준·이목희·박민수·강기정 의원 발의) 11
 2.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11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최봉홍 · 권은희 · 이명수 · 이한성 · 이노근 · 윤명희 · 이상일 · 조명철 · 김태환 의원 발의)	20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 · 김승남 · 윤후덕 · 배재정 · 박기춘 · 전정희 · 배기운 · 진성준 · 이윤석 · 김광진 의원 발의)	20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0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 · 노철래 · 송영근 · 이만우 · 장기윤 · 강은희 · 강석훈 · 김광립 · 박명재 · 정우택 · 황주홍 의원 발의)	23
1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 · 유의동 · 조명철 · 류성걸 · 유일호 · 박대동 · 이강후 · 김상민 · 김동완 · 강길부 · 신성범 · 정갑윤 의원 발의)	23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안홍준 · 이한성 · 김우남 · 유의동 · 김재원 · 조원진 · 이인제 · 최규성 · 문정립 의원 발의)	24
1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김상훈 · 김승남 · 김종태 · 박윤옥 · 박인숙 · 서청원 · 송영근 · 이노근 · 전순옥 의원 발의)	24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 · 김상훈 · 김승남 · 김종태 · 박윤옥 · 박인숙 · 서청원 · 송영근 · 이노근 · 전순옥 의원 발의)	24
2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 · 안홍준 · 김승남 · 이한성 · 박민수 · 김종태 · 유의동 · 조원진 · 이인제 · 문정립 의원 발의)	24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2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8.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 나성린 · 이노근 · 김성태 · 박민식 · 김태원 · 박대동 · 신경림 · 문대성 · 함진규 의원 발의)	31
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문병호 · 이윤석 · 박민수 · 주승용 · 이개호 · 조경태 · 노영민 · 박주선 · 변재일 의원 발의)	31
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이춘석 · 최민희 · 유인태 · 도종환 · 노웅래 · 백재현 · 김성곤 · 배재정 · 이학영 의원 발의)	38
4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	

장 제출)	38
4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4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4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4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4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4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8
5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 · 김광진 · 박기 춘 · 윤호중 · 정세균 · 한명숙 · 이미경 · 강동원 · 설훈 · 김윤덕 · 김영주 · 안규백 · 김관영 · 진선미 의원 발의)	48
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노용래 · 박민수 · 박남춘 · 부좌현 · 이개호 · 이종걸 · 임수경 · 주승용 · 추미애 의원 발의)	48
5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 래 · 부좌현 · 박주선 · 정성호 · 박민수 · 김영록 · 김광진 · 강기정 · 박남춘 · 진선미 · 김우남 의원 발의)	48
53.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이개호 · 정청래 · 이목희 · 박남춘 · 김광진 · 조정식 · 박민수 · 정호준 · 강기정 의원 발의)	48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최규성 · 강기정 · 김영록 · 부좌 현 · 주승용 · 유성엽 · 박민수 · 김성곤 · 전해철 의원 발의)	48
5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김종태 · 장윤석 · 황인자 · 박명재 · 서상기 · 홍지만 · 윤재옥 · 강은희 · 이완영 · 권은희 의원 발의)	48
5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 · 강석호 · 이철우 · 이노근 · 염동열 · 박인숙 · 김용태 · 신의진 · 김재경 · 이재영 · 윤진식 · 김정록 의원 발의)	48
5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 의)(주승용 · 변재일 · 김우남 · 이윤석 · 김영환 · 강기정 · 강창일 · 최규성 · 김성곤 · 김광진 의원 발의)	48
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5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5.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6.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7.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6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7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 · 이개호 · 유대운 · 정청래 · 부좌현 · 김성곤 · 우원식 · 최민희 · 박민수 · 김기준 · 김광진 · 전해철 의원 발의)	55
7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 · 김승남 ·	

강동원 · 진성준 · 이찬열 · 박민수 · 송영근 · 김현미 · 윤후덕 · 백군기 · 김광진 의원 발의) 55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 · 박병석 · 김기준 · 박민수 · 강기정 · 이원욱 · 정세균 · 홍익표 · 은수미 · 김성주 · 이미경 · 임수경 · 박주선 · 권성동 의원 발의)

8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김용남 · 황영철 · 김중태 · 송영근 · 홍철호 · 주영순 · 최봉홍 · 권성동 · 배덕광 · 문대성 의원 발의)

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최원식 · 은수미 · 진성준 · 김용익 · 김진표 · 원혜영 · 한정애 · 추미애 · 배기운 · 이찬열 · 장하나 · 최민희 · 한명숙 · 진선미 · 임수경 · 전순옥 · 김재윤 · 박남춘 · 안규백 · 남인순 의원 발의)

8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상민 당초 예정된 순서가 있습니다만 먼저 환노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5항 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6항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7항 정부 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8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의

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적 우려가 큰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수도권 지역에서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로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등 총량으로 관리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의 산정방식에 징벌적 성격이 들어 있어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 전문가, 관계 부처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률안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고 계신 국무위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89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지원하도록 하는 ‘실업크레딧’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다수 기업에 의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제43조의3제1호에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열거하면서 라목에서 ‘기타 권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

로서 이 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권리'로 구체화하고, 그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성년자에게 최저 임금을 알릴 때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상 저감 목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간명하게 고치고, 공중위생법상의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제13조의4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산일인 2014년 7월 1일을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2016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이 개정안은 이미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심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폐기물 취급기준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의 예상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7월 1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86항 최저임금 관련 법안,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인데 생활임금의 개념이 과연 다른 법상에 나오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조금 모호한 점이 있고요. 이게 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체계의 일괄적인 조정·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소위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8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표기구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이게 아직도 활동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따로 떼어 가지고 먼저 이것을 법사위에 와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하면…… 글썄, 이것은 다른 것들과 같이 사회적 기구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인 합의나 이게 더 모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개 의사일정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먼저 86항 최저임금법 관련해서요.

주지하시다피 일단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생활임금 개념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도 실제로 생활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장관께서 대답을 해 보시지요. 많이 논란이 됐는데 환노위에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된 거지요? 어땀어요, 생활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 그대로 '적정임금'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게 문제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런데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정부 생각은 정부 내 최저임금이 2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자치단체가 입찰이나 이런 데 함에 있어서 이것을 요건화하게 되면 지방재정법과의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위원 했지만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다, 근거법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했었지요,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이라 쓰든, 적정임금이라 쓰든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들어 있는 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다만 강제할 수 없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위원 일종의 선언적인 성격이 남아 있거나 강조되어 있거나 그 의미가 그대로 존치하는 건 맞는 거였지요, 그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의미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자치단체에서 다른 입찰 등에 강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이걸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한 논의를 해서 어찌 보면 절충적으로 이와 같이 넘어왔는데 법사위에서 2소위에 회부해서 어떻게 하자는, 저는 아무런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의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적으로 했던 것을 법사위에서 그대로 있는다? 물론 법사위에서 자구체계 말고 해당 부처에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든지 또는 예산의 목적이 크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부처나 의원 간에 여러 가지 조정이 해결 안 됐다든지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구체계 이상의, 또는 위헌이나 위법의 논리 이외에 저희들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부처의 의견도 아니고, 또 다른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아니고

그냥 어느 위원이 이야기해서 이걸 2소위로 보내 가지고 하세월로 잡아 놓는다면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를 해 가지고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것을 이제 와서 법사위에서 그 개념 자체를 다 무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기구가 있어도’ 그런 것까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 그러면 2소위 가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또 위원 분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해소 안 됐다 하면 우리가 설득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원적으로 어느 위원 한 분이 문제 제기한다 해서 이게 가면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낼 게 아니고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표결에 준하는 것까지 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문제 제기 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앞에서 김진태 위원님 말씀과 전해철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해철 간사님의 지적도 대단히 참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진태 위원님 지적이 대단히 타당하고 어느 개인의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해철 간사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소위에 가는 것보다는 우선 전체회의에서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우윤근 위원님.

○우윤근 위원 장관님,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점을 제가 질의할게요.

현재 생활임금이라는 것들이 일부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경기도·서울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우윤근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이미 시행되고 있고, 법은 아닙니다마는, 근거가 없었는데.

두 번째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이라는 법에 단일한 용어로 정의되어야 한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노위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최저임금으로 일원화하고 그 이상의 적정임금이라는 걸 했지요.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거지요, 일응의?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하지 않았나요,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게 유일한 생활임금의 근거로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최저임금만이 존재를 하는 거고……

○**우윤근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모든 것의 기준을 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보다도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화, 이게 생활임금으로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용어는 최저임금으로 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렇습니다. 구체화 될……

○**우윤근 위원** 그런 취지로 용어를 바꾸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환노위에서 논란이 되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선언적 규정 아닌가요? ‘노력하여야 한다’지만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이 저희들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드렸습시다라는 자치단체에서 입찰 등을 할 때 이 문제를 사실상 강제할 우려가 있게 되면 지방재정법이나……

○**우윤근 위원** 장관님, 이게 법문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노력이 반드시 100%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법문의 취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장관님은 이것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애매해요, 답변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정부는 최저임금만이 국가에 존재하는 거고 최저임금 이상의, 헌법에 들어 있듯이 국가와 자치단체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윤근 위원** 답변이 애매해요.

환노위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던데,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이게 지난번 2월 국회부터 계속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났다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법하과의 연계 문제 때문에 아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세요. 어때요, 찬성을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는 자치단체나 정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력하는 것은 헌법에 들

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는 특이한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모든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의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우윤근 위원** 장관님, 장관님은 지금 맡고 있는 장관의 의무가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장관의 의무 중에 하나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지켜야 될 법이 2개 존재하게 되면……

○**우윤근 위원** 그래서 생활임금이란 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법에 최저임금, 생활임금 애매하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일응의 기준은 최저임금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환노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켜야 될 법이 두 가지 있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윤근 위원** 장관님의 태도가 좀 애매하시네…… 환경노동부장관 맞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우윤근 위원** 고용노동부장관,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존경하는 이한성 간사님께서 소위 보다는 여기서 한 번 더 논의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왜냐하면 환노위에서 오래 끌었거든요, 사실은. 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여야 간에 합의는 원만히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김진태 위원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마는 수정된 것이 있고 해서 오후에 한 번 더 위원들끼리, 여야 간사끼리 협의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여부를 결정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한성 간사님 말씀대로 가결 또는 2소위 회부 여부 결정을 미루고 오늘 내 여야 간사 사이에 해서 전체회의 일단 하지요.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이야기할게요.

86번 최저임금법은 이한성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전체회의에 놔두고, 사실 장관의 답변이나 태도나 이런 것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아서……

환노위에 의견도 묻고 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은 상임위에 그대로 놔두고, 다만 고용보험법은 이야기한 대로 정책적으로 우선한 것을 여기서 막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으니까……

○김도읍 위원 저희 관례대로 하면 김진태 위원대로 소위에 가는 게 맞지요.

○전해철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구 있어도 이걸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합의할 한 법을 법사위에서 왜 잡는다는 겁니까?

아무튼 최저임금법은 상임위에 놓고 간사끼리 협의하는데 앞의 고용보험법은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김진태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진태 위원 안 되지요. 소위도 지금 마음대로 못 보내는데……

○홍일표 위원 고용보험법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논의……

○전해철 위원 아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용보험법은?

○홍일표 위원 아니, 실업크레딧제도 도입이……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 사이에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저도 또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84항하고 86항은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오늘 중으로 가결, 또 2소위 회부 여부를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전해철 위원 하나 있어요.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 아니…… 하셨으니까, 순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자니까요.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저는 더 협의하자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씀이 되니까……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온 것 같은데 생활임금이라는 게 결국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

○노철래 위원 자꾸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말 그대로 헌법에 있는 대로 저희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이 있고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철래 위원 노력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래서 거기에는 생활임금이든 적정임금이든 어떤 개념으로 쓰든 그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노철래 위원 어떻든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한다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도 액수도 제각기 달라요. 그렇다면 생활임금·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떤 적절한 수준 유지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환노위에서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말 그대로 노력을 해야 하는 정도로 하고, 따라서 다른 기속을 하게 되면 다른 법에 제한되고 있는 부분하고 충돌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충돌점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철래 위원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난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만일 이게 시행되면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까지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노철래 위원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터치할 부분은 아니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노철래 위원 결국에 이렇게 선불리 도입을 하게 되면 재정적 압박이나 최소한의 어떤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임금, 이게 편차가 심해 가지고 다양한, 각양각색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위화감만 더 조성시키고 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라는 쪽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소위에 한번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미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노철래 위원 아니, 자꾸 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홍일표 위원 됐습니다. 됐으니까……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이 하신다 그래서요.

아니, 오늘 이 건 법률안은 아까 그렇게 정리가 됐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일표 위원 88항, 아까 전문위원이 2소위에 회부해야 된다고 그러는 의견이니까 그것은……

○위원장 이상민 예,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법안?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88항 그 이야기인데.

88항이 지금 2소위에 있지요, 공중위생관리법이?

○위원장 이상민 2소위에 있는 게 아니라 2소위로 지금 하자는 전문위원 의견이에요.

○전해철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이 법을…… 지금 88항에 나와 있는데, 현재 2소위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이 법을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소위 하면 함께 처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4항, 86항은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니까 두 간사께서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85항, 8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항의 법률안은 현재 2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같이 심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소

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장관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이개호·부좌현·홍의락·박남춘·주승용·김기준·이목희·박민수·강기정 의원 발의)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상민 당초 예정된 대로 정무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항 정부 제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출석하신 국무위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님.

정재찬 위원장님은 오늘 처음 출석하시나요, 법사위에?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여러 번 하셨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그러셨나요? 자주 못 배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주 오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위원장 이상민 임 위원장님,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존경하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은 2003년 주택금융공사법의 제정에 따라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업무가 이관된 이후 현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회사 및 발행된 증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 취지가 상실되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개정하여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본회 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25조제4항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사무소인 본회를 어디에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모호하므로 동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동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지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은 현재 동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법이라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한 총 99개의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며,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상임위원의 잔여 임기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계약 이전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지급의무자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의무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증서 발급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집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해당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체적 규정의 순서에 따라 다시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차 시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정의 적용 시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이중규제 소지를 없애고,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 온라인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중개 방식 등을 정하고 현행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시켜 주는 대상에 130조를 포함시키도록 안 117조의10제1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종전 기업채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돼 있음을 고려하여 그 명칭이 '기업채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바뀌면서 조문 위치만 변경되는 기업채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도 기업채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에 맞게 부칙 제2조를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위임 범위의 명확화 및 약칭 오류를 바로잡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대부업자 등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를 전제로 규정된 주식 기준에 출자지분 기준을 추가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방송광고 제한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별도의 절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이므로 다른 위원회와 같은 절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의 통일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오늘 준비 많이 해 오신 것 같네요.

○김진태 위원 제가 자꾸 무슨 반대 전문 위원처럼 되는 것 같은데,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일정 10항 대부업법이요, 이것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광고를 규제하자는 건데요. TV를 틀면 대부업체 광고가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좀 짜증나지요. '뭐 이런 것 자꾸 이렇게 나오고 그래. 이것 괜찮나? 좀 규제해야 되겠어, 법으로'……

자,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국가가, 법이 그런 데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안 돼. 22시 이후에만 광고해’ 저는 그것부터가 벌써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대부업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문제가 많고 하면 또 좀 다른 문제겠지요. 과연 대부업체라는 것이 그렇게 악이나?

그 짜증나는 사람들은요, TV만 틀면 광고 나오는 것에 짜증나는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예요. ‘아니, 은행에 가면 대출이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이런 게 자꾸 우후죽순으로 나와 가지고 귀찮게 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공해일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게 도우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은행에 가서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되고 신용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부업체가 불법 업체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법체계 내에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정말 문제는 불법 사금융이예요. 아직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폭리, 전혀 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고리를 받고 안 갚으면 주먹들 데리고 가 가지고 강제로 받아내는 불법 사금융업체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금융위원장님, 지금 방송광고 제한하는 게 금융위에서 발의한 거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발의는 의원입법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진태 위원** 금융위에서 발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대부업법은 본래 여러 가지 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융위에서 발의한 건데 거기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른 게 하나 들어간 거예요.

방통위 입장은 뭐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다른 부처에 의견을 조회했었고, 그리고 법무부에도 저희가 법률적 문제가 있느냐를 의견을 나눴는데 법무부는 의견이 없다……

○**김진태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방통위에서도 반대 입장이에요. 지금 이래저래 해서 엄청나게 대부업법 이미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자율 다 집어넣어라,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주요 시간대에 하지 말라고 지금 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주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목적의 적합성, 과연 이게 목적에 맞느냐? 청소년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전혀 반대입니다.

수단의 적합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수단이 맞냐? 어떻게 방송광고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광고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법익이 균형돼 있느냐? 이미 형성돼 있는 광고시장에 미칠 피해,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게 나오면 청소년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 같아. 짜증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지……

우선 한 가지는, 이 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100억 원 초과하는 범위는 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중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TV만 틀면 나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짜증이 납니다.

중요한 건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왜 짜증이 나냐면 나는 안 빌리기는 하는데 누군가 좀 급하다고 순간적으로 번호를 눌러서 돈을 빌릴까 봐 짜증이 나는 거지요. 내가 필요 없는데 저게 나와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괜찮은데 누가 순간적으로 저걸 보고 눌렀을 때 올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면 이자 20%, 월 20만 원씩 낸다고 치면…… 그 이자 20이면 얼마 안 되는데요. 이자 한번 밀리고 한번 밀리고 하니깐…… 제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별생각 없이 이자가 적다고 해서 빌렸는데 이자가 적으니까 놓고 있더니 나중에 딱 1년 후에 2000만 원, 1000만 원 빌린 게 3600만원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과정은요, 꼭 또 보증이 있어야 해요. 전세 계

약세를 갖고 오든지 집 담보서를 갖고 오든지 뭐가 담보가 있어야 빌려 주는데요,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할 때 내가 찾아서 갈 경우를 이렇게 저축은행 등의 금융이 해야지, 수시로 TV만 틀면 나오는 광고 이것으로 순간적으로 누르면서 국민의 경제가 파탄 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이 법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가 어린이·청소년, 특히 또 취약계층의……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잘못된 금융관을 심어 줄 수 있고 또 취약계층에게 충동적인 혹은 잘못된 대부업을 사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서 저희는 이것은 다른 광고 규제의 사례와 같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여기서 하나가 걱정된다면 이런 겁니다. 이 광고로 방송들이…… 사실은 광고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방송들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광고비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부터 이 광고가 대량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의존해서 케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됨으로써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광고가 작은 케이블이나 이런 방송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곳에 편중되다가 이 광고가 많은 시간대를 장악했는데 빼야 하니 이것이 사실 방송업계의 어려움으로 봉착하게 되는데요.

저는 더 열악한 사람들과 더 취약한 사람들이 집안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게끔 최악의 상태에서 필요할 때 이 금융을 찾아가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갚게 하는 건전한 금융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이 올라왔고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돼서 통과 되어 왔는데 법사위가 잡을 권한은 없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도 있지만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자연스러운 광고보다는 좀 더 정제된 시간 편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꼭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저희의 생각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영교 위원** 제 말씀의 답변으로 말씀해 주십

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대부업체가 한 870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광고를 하는 회사는 9개뿐입니다. 주로 외국계 대부업체 중심으로 해서 9개 정도가 하는데 광고선전비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느냐 하면 2년 만에 3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대부업체 전체 당기순이익 규모의 4분의 1을 다 광고선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광고선전비는 결국 어떻게 전가되느냐, 결국 대부업체의 금리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업체에 대해서 금리를 강제로 낮출 수는 없지만 부당하게 지출되는 요인들을 줄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서민들에게 과도한 대출금리나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원인행위를 제거해 가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거나 혹은 청소년, 여러 계층에 유해한 경우에 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적 사례는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현재에서 판결도 광고 제한 자체가 ‘입법 형성권의 여지가 큰 범위다’ 해서 그 제한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돼서 사회에 유해를 끼친다면 입법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부업체의 실지 상황을 보면 아주 극소수가 과도하게 하는 상황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대부업이 등록제로 돼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등록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한 8700개 정도……

○**노철래 위원**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8700개?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노철래 위원** 이 중에 외국계는 얼마나 돼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중에서 주로 일본 쪽에

서 투자하는 회사 중에 대형 회사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4개?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전체적으로 큰 회사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철래 위원** 대부업체에서 일본계 4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는 9개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4개 회사만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 그 회사가 주로 상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9개 중에서 4개 일본계 빼고 5개는 그러면 다른 국가 겁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닙니다.

○**노철래 위원** 아니면 한국, 국내 겁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국내 회사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국내 것하고 일본계하고 광고 비중이 비슷해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광고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광고 시간대는 주로 저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는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혹시 광고로 인해서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든지 여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통계적으로 특별히 그런 영향을 아주 과학적으로 했다가보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초등학생들의 한 90%가 이것을 봤다. 그다음에 하루에 10번 이상 본 사람도 다수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 9개 회사가 어느 정도 광고를 하느냐 하면 하루에 1500건을 합니다.

○**노철래 위원** 하루에 1500건?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리고 한 달에 4만 5000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를 우리가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월 4만 5000건을 앞으로 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판단에 주중에는 한 56% 정도가 줄어들고요, 주말에는 한 60% 정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어쨌든 김진태 위원이 지적한 것

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로 인해서, 물론 고리대금업이나 이런 것이야 등록되지 않은 군소업체들에서 그런 부당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적절히 규제해 가는 방법으로 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필요한 부분, 방송사들이 이로 인해서 자기네들 경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도 기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의견은 김진태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해서 이 법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데 김진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통과하면서 소수의견으로……

○**위원장 이상민** 우윤근 위원님 말씀 듣고……

○**우윤근 위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 의견에는 늘 경청할 만합니다.

저는 늘 보면, 하여튼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서 법안이 신중하게 통과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것들을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마라, 충분히…… 그냥 짜증난다고 무조건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도, 입법만능 그것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개인의 입장은 아니리라고 보여져요. 정부가 이법을 찬성, 물론 방통위, 정부 간에 약간의, 방통위가 정부기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적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견해가 다 경청할 만합니다.

그런데 보다 큰 목적은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 하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공해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과잉광고다, 입법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런데 특히 무분별한 대출의 증가를 방지하자,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할 만하고 광고 규제가 과연 위헌인가……

법무부의 입장을 들었다고 하던데 법무부는 어떤 견해를 냈어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법무부는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우윤근 위원** 법무부에 공문으로 그런 견해를 받았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저희가 법무부하고 정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러면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규제하는 것하고 오후 10시까지?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1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우윤근 위원 10시까지 규제하는데……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러면 현행 기준으로 보면 한 56% 정도는 규제하고 한 44%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윤근 위원 김진태 위원의 의견은 경청할 만 한데 광고가 줄어들었다고 이용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광고는 충분히, 이런 대부업체가 있다는 것 아마 효과는 있었을 것 같은데……

권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우윤근 위원 아주 유능한 법조인이셨는데, 깊은 검토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위헌성이 어때요? 상중하로……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글썽요,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 그래서 제가 선지형으로 상중하로 했는데……

법무부 견해가 또,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견해가 위헌성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 견해를 달아서 노철래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은 더 끝면 자꾸 논란이 일 것 같아요.

○김진태 위원 제가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유능한 법조인은 우윤근 위원도 유능한 법조인이십니다. 본인 입장을 밝히시면 되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법사위에서는 소위 회부를 주장했을 때 한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김진태 위원 아까도 그랬고……

○위원장 이상민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소수의견으로 할 때도 있고 또 회부할 때도 있으니까……

○김진태 위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법 개정안 때 어땠어요? 그날 새벽 3시에 제가

그렇게 반대 목청을 높였을 때 다른 위원님들 또 국무위원들 경청해 줬어요?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졌잖아요? 위원이 고민을 해서 얘기했으면 경청해 주는 분위기를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업법 이것이 글썽, 처음부터 금융위에서 꼭 넣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끼어들어 온 것이고 ‘법에 허용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특정 시간 때 방송광고를 금지하기보다는 현재의 사전·사후 규제체계를 활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의견이 아니고 방통위 검토보고서에 나온 의견이에요.

정말 저는 항상 법사위에서 얘기할 때 헌법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위헌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먼저 대부업법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업법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이 법이 방송광고 제한도 있지만 사실 일관되게 여러 체계라든지 또는 위법한 것, 남용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법인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이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사실은 광고 분야보다는 지난번 동양사태에서 동양그룹이 대부업체를 동원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동양사태를 더 키웠는데 그래서 이번 법률에서는 대부업체가 계열주나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우회적인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또 중요한 것 하나……

○전해철 위원 그래서 등록·감독체계를 개편한다든지 등록요건이나 임원의 결격사유 등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과정에서 지금 금융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이 있다라고 했지만 상업광고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완화가 상당하다’ 이것을 아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대부업 광

고는 사무실 건물 옥외만 허용한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일본도 방송 규제를 일부 하고 있고요.

○**전해철 위원**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옥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우리나라 경우도 위스키는 광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것 말고 여러 가지 광고 제한 대상들에 있는 광고……

○**전해철 위원** 광고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사례들이 있지요.

○**전해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법률 판단을 하는 법무부에서도 위헌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 면에서 그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논의 과정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9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클라우드펀딩법이지요? 이것도 위원장님이 대답해야 되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것 역시도 온라인 소액투자자를 위한 방안이 충분하나, 장황하게 제가 논쟁이나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것이 좀 더 보호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신중한 검토의견이 있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뒀습니다.

○**전해철 위원** 자세한 것은 말고……

또 사모펀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모펀드가 독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완화도 건전한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방어비용을 과다하게 하는 것 같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고.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좀 더 보완에 보완을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정무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서 통과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을 저도 문제 제기하고, 또 이걸 더 논의하고 싶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법안 통과 필요성 때문에 문제 제기에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 제기는 남겨 두고 대부업법은 통과하고,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에서 시행할 때 충분히 잘 배려하고 또 검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한성 위원** 앞에서 김진태 위원님, 늘 참 예리하게 또 국민의 기본권 보호 입장에서 적절한 질문을, 늘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방송을 보다 보면 이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장은 굉장히 달콤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돈이 다급하지 않은 사람은 방송이 짜증나겠지요. 그러나 돈을 일단 빌릴 때는 달콤하고 우선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런데 이자를 줄 단계가 되면 대단히 짜증나고 고통스러워진다, 다 겪어본 일이고…… 또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김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대부업자들의 직업활동의 자유라 할까 또 돈을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얻을 자유 이런 것이 침해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 자유 이전에 과도한 측면도 있는 만큼,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한계점도 깊이 성찰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늘 그렇게 적절한 지적을 하고서도 소위에 회부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뜻을 공감하고 있고 또 성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대부업법 내용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서 대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고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떤지 김진태 위원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하여서인가요?

○**임내현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님이 인정했듯이 김진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담뱃갑에서 건강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했듯이 이번에 금융위원장께서 말했듯이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규모가 커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조절하는 문제는 마치 거기서 원치 않지만 담배의 해악성을 높이되 본질적으로는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측면으로 지난번에 했다면 여기도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고 그 정도를 줬다면 위헌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출은 안 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당이고 지금 여당에서도 몇 분이 하니까 저는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또 전해철 위원께서도 9항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할 것도 있지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양껏다고 이렇게 관용적인 그걸 해서 저도 이 정도의 공감이 될 때는 한 분이 하더라도 양해를 받아서 통과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그렇게 소수의견 달고 처리하는 걸 양해해 주시지요?

○김진태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렇게 정리를……

○홍일표 위원 제가……

○위원장 이상민 다른 건입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홍일표 위원님, 다른 법률안……

○홍일표 위원 대부업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사실 김진태 위원 위대한 반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일표 위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해도?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저희 충분히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를 해서……

○홍일표 위원 그런 거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일표 위원 이게 사실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동안 지배구조에 관해서, 제2금융권이 새롭게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이 있다는 점에서는, 법률로 규율이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금융위에서 모범기준이라 그래 가지고 내부적인 지침 비슷하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써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과 저축은행은 그동안 지배구조에 관해서 규율이 있었는데 나머지 증권이라든가 보험의 영역까지 이 지배구조에 대한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일표 위원 그동안의 내용과 여러 가지 많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 대주주일 경우에는 금융위가 그 사람들의 규제 위반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대주주와 차별 가능성이 있다, 국내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어떤 규제를 새로 신설하거나 그럴 때는 대규모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외국 마켓들은 또 다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어떤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적격성심사를 정례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례적으로 하게 되고 그 대주주에 대해서는…… 외국계 대주주 저축은행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일본계 쪽도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도 저축은행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넓혀지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정례적으로 하게 됩니다.

○홍일표 위원 그 사람들도 다 규제를 받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습니다. 저희가 엄격히 조사할 겁니다.

○홍일표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상민 예.

○우윤근 위원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이 질의해서 좀 유관한 사항 같아서…… 제가 상법 공청회를 하는데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워낙 또 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견을 들어 보려고 질의할게요.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그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3년 전인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한 게 있어요. 정부입법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주요내용은 대표소송이랄지 전자투표 또 감사와 이사 분리선출, 이게 법무부 안으로 냈다가 아마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게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대통령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대통령께서 추진한 경제 민주화 입법 중의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안이고 정부안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까지 됐다가 좌초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여태까지 기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장관한테는 몇 번 질의하고 오늘 공청회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소송이랄지 전자투표제 또 감사와 이사 분리, 이건 정부안이었어요. 저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외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투명하게 경영하고 잘 방어하면 되지 않느냐, 천년만년 해먹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지배구조는 투명하고 그리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우윤근 위원** 좋은 의견을 좀 주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장 이상민**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7항, 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3항, 4항, 5항, 6항, 9항, 10항, 11항 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진태 위원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없지요?

세 분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재위 소관 법률안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기재위 소관 법률안까지만 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이나 장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준 장관의 사정으로 15항부터 27항까지는 맨 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최봉홍·권은희·이명수·이한성·이노근·윤명희·이상일·조명철·김태환 의원 발의)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승남·윤후덕·배재정·박기춘·전정희·배기운·진성준·이윤석·김광진 의원 발의)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2항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항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집행실적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제사유를 보다 엄격히 정함으로써 조달계약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일표 위원님.

○홍일표 위원 질의가 너무 없어도 무성의하다고 보일 것 같아서 조달청장님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국가 당사자 계약법 이게 이번에 나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국제적으로나 특히 EU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 보호—이런 큰 흐름과 연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이른바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이런 개념이 하나의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고, 지금 인도나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CSR을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할 때는 꼭 계약과정에서 CSR 관련 정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공공조달시장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나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바꾸는 이런 내용에서도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과 여성 기업인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만 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문제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도입 법안 개정안을 냈는데 알고 계신가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재위에 지금……

○홍일표 위원 그것 잘 통과되게 협조 좀……

○조달청장 김상규 예.

○홍일표 위원 협조가 아니라 하여간 그 부분을 잘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달시장이 국제사회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재부 차관님도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공적영역이든지 CSR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점점 확산될 추세거든요.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앙부처에서도 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잘 알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조달청장께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잖아요?

○조달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입찰을 조달청이 추진하잖아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때 어떠한 부속이나, 스펙을 정해 줘 가지고 합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스펙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우

리는 그걸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박지원 위원 글썽, 그렇게 스펙을 요구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만약에 냉장고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LG 냉장고로 해 달라 혹은 삼성 냉장고로 해 달라 그런 것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조달청장 김상규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냉장고를 말하고 1000cc면 1000cc 이런 내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잘 아시지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박지원 위원 거기의 주요한 기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서너 개 회사에서 특허 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을 기초단체에서 원합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아니, 기초단체에서……

○박지원 위원 아니, 광역단체나 지방정부에서.

○조달청장 김상규 지방정부에서 특정 스펙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런 스펙이 필요할 경우……

○박지원 위원 그것은 청장께서 실무자한테 물어 가지고, 실무자를 보내도 좋으니까 저한테 한번……

○조달청장 김상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 예.

○조달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얼마까지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야 됩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그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입니다.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할 뿐입니다. 강제요건은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기재부 방 차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 주든지 조달청 입찰을 해서 비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방에서 비밀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 같은 것을 만들 용의가 없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중앙 입장에서는 중앙의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화를 해야 되지만 또 지방에서는, 지금 지방자

치와 관련해서 중앙이 일방적으로 그걸 강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 중앙정부에서 강요할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예, 그런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하다못해 인쇄물 같은 것도 다 쫓개기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두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 비리가 없어지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나 혹은 조달청에서 한번 연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달청장 김상규 예.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오늘 오전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동대문상가 그다음에 명동상가 이쪽 분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좀 했어요. 동대문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오는 버스가 한 8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물건을 해 가야 되는 소매인들이 안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확 줄어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기재부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은 중랑구인데, 서울의 곳곳에 이런 상가 쪽으로 나가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전국에서 봉제공장이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아니에요, 공급이? 왜냐하면 팔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전체가 악순환인데 어제도 봤지만 경제를 보면 이 메르스가 6월까지 가게 되면 5조 정도 손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지금 상인들도 다 가게 문을, 뭐라고 그럴까 하여간 손님이 없으니까 물건에 대한 문제 또 물건을 납품하던 사람들의 문제 이게 연쇄적인데요, 그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달청장님께, 우리가 장애인 그다음에 보훈가족 이런 쪽에서는 물건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장 김상규 예,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서영교 위원 수의계약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든 하여간 작은 봉제업체

들도 한꺼번에 묶어서 조달청에다가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눠질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거기가 무너지면 120만 원씩 받던 가족들 또 연계된 가족들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과 기재부에서는 지금 심각한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나마 기재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기재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금리 경영자금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하여간 이걸 언 발에 오줌 누기고 전반적으로 대책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신 김에 여쭙 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우선 정부로서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종식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력을 기울여서 조기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긴급적인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약 4000억 정도의 자금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가 있고요. 우선 격리되시는 분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병원들의 경우에 긴급물자, 필요한 물자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자들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 긴급조치를 했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각 부처가 예비적으로 필요한 예비비에 대해서 총 1000억 원 상당의 예비비 조치를, 그중에서 약 500억은 다른 사업비를 긴급자금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고 신규로 약 500억 정도의 예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 사후조치와 또 전반적인 예방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대책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이 곧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포함해서 발표를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김상규** 소상공인 문제는 공동수급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인데요, 시행령에 있는 걸 법률로 승격해서 구체화시키는 건 마땅하고 잘한 겁니다만 이 조항 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제 입법인데 1호는 부실·조잡·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자, 다음에 2호는 담합한 자, 3호는 권한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다음에 4호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호는 법률 위반 또 6호는 법률에 따른 요청을 받아서 한 건데 7호는 ‘그밖에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라고 했습니다. 침해의 사실도 아니고 단순 ‘염려’라고 했고, 그다음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저는 이것도 앞의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도 아닌 막연한 염려만으로 이렇게 규제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은 지나치게 포괄적 위임을 했다라는 이유로 2소위에서 2소위 위원님들이 법리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4항은 아까와 같은 이유로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오전 법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노철래·송영근·이만우·강기윤·강은희·강석훈·김광림·박명재·정우택·황주홍 의원 발의)

1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유의동·조명철·류성결·유일호·박대동·이강후·김상민·김동완·강길부·신성범·정갑윤 의원 발의)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안홍준·이한성·김우남·유의동·김재원·조원진·이인제·최규성·문정립 의원 발의)

18.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상훈·김승남·김종태·박윤옥·박인숙·서청원·송영근·이노근·전순옥 의원 발의)

1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상훈·김승남·김종태·박윤옥·박인숙·서청원·송영근·이노근·전순옥 의원 발의)

2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안홍준·김승남·이한성·박민수·김종태·유의동·조원진·이인제·문정립 의원 발의)

2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이상민 다음은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님, 다음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해서 여인홍 차관님, 신원섭 산림청장님, 세 분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승우 의원 대표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6항 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항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항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외식산업 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 19항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항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항 정부 제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항 정부 제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항 정부 제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이 몇 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 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환지방식을 허용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마리나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차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품종보호원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전산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범주에 여가활동 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유통시장의 자율화와 농협을 통한 농약의 비축·공급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농협에 의한 농약 공급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

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외식 사업자단체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안 제12조제2항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소관기관의 감독권이 민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개별 법률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외식사업자단체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법인의 정관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사업자단체)의 지도·운영에 관한 사항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조항을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감독·운영·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김치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법인의 정관기재사항 및 소관기관의 감독권과 김치사업자단체의 운영·지도·지원 관련 부분에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가 있어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마린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린항만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식물신품중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품종보호 원부(原簿)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고령 농어업인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불리지역 정의규정에 어업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제목을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구입·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려는 것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및 응시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해보험 사업자 및 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9조제1항은 정부의 재해보험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를 강행규정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재정은용의 탄력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태료 관련 제32조제2항제1호 법 시행일 및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제한과 관련된 부칙 규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이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것임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여객·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내용을 목적규정에 마련하고, 위임의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제31조에서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새로운 사유 발생 등 상황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1항은 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추가한 반면 제3항은 실제 조문화단계에서 관련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법률 내의 조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해수부장관께 질의할게요.

21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요, 이 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던 마리나법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어떤 연관성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준비합니다마는 여기는 보면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간편하게 하고, 또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하면서 마리나사업에 관한 사업을 보다 편의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사업시행자를 확대도 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좀 완화를 해서……

○전해철 위원 완화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결국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좀

더 민간업자의 경우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이 범위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장관께서 취임하시기 전이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법은 일전에 법사위에서 상당 기간 소위에 계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대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 이유가 마리나항만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몇 개월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 난개발 우려에 대한 것을 불식시키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크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좀더 많은 고려와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된 게 없었거든요. 그것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실제 이번에 전국의 마리나 거점 항만을 모집했는데, 남해·서해·동해 이렇게 2개씩 6개를 모집했는데 그것도 겨우 6개를 채운 정도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공모가 적다 해서 난개발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아닌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당장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 침체라든지 앞으로 마리나항만이 요트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시간이 좀 지나야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있어야만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고 현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아무튼 난개발에 대한 지적이, 우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현안도 같이 좀 해수부장관께 질의할게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수요 관리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계획을 승인할 때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그러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같이 현안도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얼마 전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서 세월호 시행령을 바로 개정하려다가 3+3에서 논의하자라고 한 것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원내대표회담에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전해철 위원 결국은 그 문제가 국회법 개정까지 가서, 현재 그 논의가 어때요? 지금 진전 안 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담당 위원회인 농해수 위원회에서 아직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예, 안 되고 있거든요. 국회법 경과를 좀 보자 했는데, 결국은 3+3이 문제가 아니라 농해수위 내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법사위에서 이미 장관께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더 장관께서, 물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 취임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법을 만들었던 취지와 또 참사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 등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더 각별하게 생각해서……

특히 그 법을 만들었던 취지를 보십시오, 좀. 50여 차례 협상해서 어렵게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시고, 3+3에 그냥 맡기실 게 아니라 장관께서도 관심이나 약간은 전향적인 것을 보여서 가지고 시행령 문제가 마무리되고 특조위가 정상화되는 데 장관께서 각별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특조위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또 세월호 사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마리나법은 제가 문제 제기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박지원 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박지원 위원 지금 전해철 위원 질문에 장관께서 마리나항만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해·동해·남해, 두 항씩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일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박지원 위원 언제부터 공모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모절차는 현재 마감돼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공모절차는 마감했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여섯 개 항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여섯 개 항을 각각 한국의 서해·동해·남해, 두 개씩으로 정해 가지고 공모절차에 들어갔는데 현재 응모한 항구의 숫자가 여섯 개에 불과해서 그게 다 지정이 될지, 아니면 또 추가로 해야 될지……

○**박지원 위원** 최종하지만 응모한 항이 어디어디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그 기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한 군데,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지원 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장관께, 전임 장관, 그 전전임 장관, 모두에게 자꾸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 상승으로 어족균의 형성 등 금어기 이런 문제를 조정해야 된다고 했고 장관께서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지난번 법사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현재 기후 변화 상황이라든지,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로 목포항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박지원 위원** 아니 목포항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전체는 이미 다 보고 있고요, 말씀을 주신……

○**박지원 위원** 아니 글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다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어족이 중국 어선들이 쌍끌

이로 끌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해경 해체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 중국어선 방위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현재 실제 개개 사안의 단속권한은 해경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도 어업지도단을 통해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불법어로를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조금 줄어가고 있습니까? 근절돼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부분의 어종이 금어기에 있는 상태라서 통계를 내서 어떻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경과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동해 쪽에서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고 서해에도 아직은……

○**박지원 위원** 지금 현재도 중국 불법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어기인데 중국은 하고 이런 문제를 해수부에서 어업지도선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국가재난처로 옮겨 가지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어민보호 차원에서 국가재난처와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게 새로운 것인데요. 지금 남서해안에 중국 팽생이모자반, 보고받아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대략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게 올해만 전남과 제주 등에서 1만 1500여t을 수거했지만 여전히 해상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신안 비금도의 경우는 어업에 종사하는 20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조업을 접은 상태이고, 승객 100명 이상을 태운 여객선도 모자반에 스크루가 걸려 가지고 운항이 중지된 적도 있습니다. 이 모자반이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온난화로 인해 전남과 제주 해역에 수온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장관께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떠나서 이제 중국 갱생이모자반까지 어업 조업은 물론 여객선마저도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보니까 장관께서 정확하게 보고받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가지고 그 현황에 대해서 실무자라도 좋으니까…… 아까 복도에서 차관 만나서 물어보려다가 여기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안 물어봤어요. 좀 보고해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자반 같은 조류라든지 아니면 요즘 해파리, 적조, 비브리오팀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전에 대비하고 또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더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춘석 위원님, 안 하세요?

○이춘석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조항 중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농림부에서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여기 내용에 보면 8조의2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이 사업을 규정하는 사업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임대료도 들어가 있고 등등 운영기준도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이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상향 조정 범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보면 제5조 보험목적물을 정하는데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곧바로 시행령에 정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더 하위 규범인 장관 고시로 정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합당한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듬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해운법을 보시면, 이것은 법률이 해양수산부 소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여기 31조를 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열거했고 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돼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요.

형사처벌 조항인데, 다른 제재조항도 그렇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특히 더 명확해야 되는데 여기 이번에 시행령이 법률로 하면서 뭐가 올라갔나 하면 '비상업적인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이유로 등등을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업적인 이유는 제가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범죄구성요건으로서 보다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2소위에서 법리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같이 구성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개념을 써야 되는데 '비상업적인 이유' 이렇게 쓴다면 좀 불확정 개념으로 해서 모호한 개념으로 실제 처벌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빨리 2소위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할게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위원장 이상민 3개는 2소위로 넘기는 것으로……

○서영교 위원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지요.

○서영교 위원 해수부장관님,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단법인을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이게 해수부에서 반려됐다고 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월호 유가족,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출범 들어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들어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가 그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세월은 가면 갈수록 또다시 생각나고 매일 잠도 못 자고 또 그 가족 중에 떠나는 분들도 나오셨고 병들고, 가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험한 일을 겪고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협의회를 만드는데 이게 해수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라며 반려했다고, 모든 곳에서 다 반려했다고 하는데…… 해수부장관님은 좀 특별하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우리 정치인들은 도와야지요.

세월호 때 저희가 알았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도 아니라고 그리고 안행부도 아니라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보니까 안행부 안에 안전 관련한 매뉴얼도 없고 그 매뉴얼이 왜 없냐고 봤더니 법제처가 반려했다 그리고, 안행부는 법제처가 반려했어서 못 했다고 그리고 법제처는 내용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모두 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눈앞에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는데요.

이번도 똑같아요, 장관님. 이번에 메르스 1호 환자가 들어왔는데 출입국관리 때부터 관리됐어야 했는데 법무부에서부터 관리가 안 됐고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삼성병원 갔는데, 우리는 다 삼성병원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삼성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메르스인 것 같아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올렸더니 바레인만 갔다 왔으면 메르스 아니더라고 반려했고, 두 번 반려했고 세 번째 돼서야 메르스 확진환자인 것 알고. 그때는 벌써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었지요.

정부가 이리 반려했고 저리 반려했고, 이리 책임 떠넘기고 저리 책임 떠넘기고 그러다가 지금 대한민국 이 사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저도 무서워요. 저도 사람 만나기 무섭고, 이게 가까워서 2m 내에서 침이 튀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지요? 거기서 숨쉬면 여기서 걸리나 봐요. 지역사회에서 감염되고.

우선 우리는 뭐든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그렇지 않아도 시행령 국회에서 만들기까지 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게 다 또 세월호 시행령 때문 아닙니까?

저는 힘 있는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더 얘기 안 나오게 ‘이것은 그것과 관련한 거니까 해수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받아 줘라’라고 검토해서 만들어내세요. 그러자고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자고 정치인 장관 가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럽게 하고……

또 이번도 마찬가지로 메르스로 죽어간 사람은 죽어간 사람만 서럽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만 서럽고 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것 답변 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세월호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것과 메르스를 반려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서영교 위원 전부 다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부처하고 의논도 해 가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장관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른 장관님들이랑 또 다르잖아요. 눈치만 보는 장관이 아니고, 유기준 해수부장관 갔을 때는 우리가 하여간 그런 기대를 한다고 했었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안 풀리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들 좀 풀어내는 장관님이 돼 주세요, 저희 또 이런 질문들 안 하게. 힘 없는 해수부 직원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답 좀 저희 방으로 보내주십시오. 답을 보내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6항, 17항, 21항, 22항, 2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9항, 20항, 24항의 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5항, 26항, 27항은 법리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기준 장관님 3시에 큰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속개를 늦게 해서 불편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면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위원장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세 분 다 노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8.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나성린·이노근·김성태·박민식·김태원·박대동·신경립·문대성·함진규 의원 발의)

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문병호·이윤석·박민수·주승용·이개호·조경태·노영민·박주선·변재일 의원 발의)

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이상민 국토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8항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9항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법률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도는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진·출입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로서, 사도의 설치기준은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영세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하여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시설의 범위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추가하고, 동 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에 관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 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하고, 현재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통영향평가의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지정에 대한 협의와 협의 불성립 시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23조제6항은 전단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이행의무사항 확인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23조제6항 후단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통 SOC에 대한 타당성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목록 제출의무를 명시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와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 등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부지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장비 설치 차로로의 운행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수립하는 재생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단계에 수립하도록 하며 재생사업 재정비방식 및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생사업 동의시기를 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시행자가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재생사업 방식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에 얻도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개정문에서는 이러한 입법 의도가 누락되

어 개정안 제39조의8이 현행법과 같이 조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해소시키고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사망,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등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있는 경우와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안건 34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안 제39조의13제1항을 보면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 시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지자체장이 일방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법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안 제39조의13제2항 활성화구역 사업시

행자에 대해서 개발이익 재투자율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존 재생사업시행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부과해서 형평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안 제39조의19항 동 법을 통해 산업단지 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조를 보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경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재정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때문에 2소위에 회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상민 34항 법률안이요?

○이춘석 위원 예, 34항.

안건 제36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4조5항을 보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경우에 부동산 공급의 허용이라는 권리관계 변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2소위에 회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진입해서 부산으로 빠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챙겨 보겠다고 하시고 담당국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방에 보내 온 내용은 '검토된 바 없다' 이게 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담당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일평 담당국장입니다.

제가 검토드린 바……

○김도읍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장관님,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전체 중에 몇 %가 무료고 몇 %가 유료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정확한 %는 제가 잘 알 수 없고요.

○김도읍 위원 아니,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 장관님께서 바쁘시면 담당 국장이라

도 챙겨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제가 여기에 출석하신 이후에 당연히 그것은……

○김도읍 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기억하기로는 약 60% 가까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무료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60% 가까이 무료화……

○김도읍 위원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하여튼 무료구간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부산광역시에서 시발하는 고속도로에서 부산광역시에서 내리는 이 도로가 유료화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주민들은 고속도로에 땅을 공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속도로가 시발하고 바로 몇 km 안 되는 거기에 IC를 만들어 놓고 유료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서울외곽순환도로는 60%가……

서울하고 지방 차별하는 겁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무료화되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당연히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저도 참……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도읍 위원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64%가 무료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이 다들 어려운데…… 지금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녹산공단·미음산단 등 공단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통행료 보살피 주는 것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극히 예외적이다, 전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면 몰라도 서울외곽순환도로는 64%를 무료화시켜 놓고 왜 지방에는 이것도 하나 못 챙겨 주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가락에서 서부산 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도읍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구간별로 무료화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갖고 있다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요, 무료화되어 있는 데 많고.

챙겨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도 분명히 무료화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확한 %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도읍 위원** 방금 제가 직원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는데 64%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히 맞으리라 보고요.

하여튼 제가 이것을 다시 안 챙겨본 것은…… 분명히 검토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의사일정 37항 임대주택법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그냥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러는데, 장관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임대주택법이 지금 국교위에 후속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같이 검토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일 국토법안소위를 하는데 거기서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임대주택법의 다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거주와 임대료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등록 임대주택 확충을 목표로 하는 지원법,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심사가 되어서 아마 소위 통과되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병합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현재 올라온 상태에서 계류를 부탁드립니다.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오늘 법사 전체회의를 통과해 버리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개정을 못 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견……

○**위원장 이상민** 37항이요?

○**이한성 위원** 예, 37항 임대주택법 이것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는 게……

○**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에 계류시킬까요?

○**이한성 위원** 예, 그렇지요.

○**임내현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전해철 위원** 전체회의 계류예요, 2소위예요?

○**임내현 위원** 함께 처리……

○**위원장 이상민** 통합하자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한성 위원** 그러든지 2소위 해서……

○**위원장 이상민** 아니, 2소위 가면 또 2소위 넘어와서 2소위 하니까 수석전문위원한테 맡겨서 전체회의에서 통합시키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임내현 위원** 아니, 기존 법이 먼저 가 있는데 이것이 먼저 뒤에 본회의로 가면 적절치 않으니까……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두고 통합시킨다니까요. 통합이든 관련 심의를 하면……

○**임내현 위원** 전체회의에 두고요?

○**이한성 위원** 그때 봐서 또 소위에 가든지.

○**위원장 이상민** 예.

○**전해철 위원** 잠깐, 이야기 좀……

○**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장관님, 방금 이 법이 병합할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토위에서 넘어오는 법안하고 병합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아, 제가 병합이라고 한 것은……

○**전해철 위원** 잘못 말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병합해서 다시 심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전해철 위원** 그 법이 우선적이라는 거지요, 통과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 법안이 저희 국토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병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을 본회의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병합은 아니고요. 병합 심의는 아닙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그 법이 우선적으로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남겨 주라는 건데요.

사실은 장관께서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야말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법안에 대한 발의의원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 의원에게는 사실은 불측의 어찌 보면 불이익이 가는 수도 있어서 하는데, 이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가 돼서 우리 당 위원께서도……

○**이춘석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전해철 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괜찮다고 일단 양해를 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관련해서 하나 장관께 현안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혹시 보신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전에 본 적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거기 보면 참사 관련해서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된다’ 의무조항이예요. 이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 관련해서 국토위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나 방안을 만든 것은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되는 것을 저희가 충실히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별로 논의가 안 돼 있지만.

○**전해철 위원** 해야 되는데, 그 특별위원회가 사실 지금 활동을 잘 못 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이 법에 따라서 안산사에서 지금 국토부에 여섯 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먼저 만들어서 이 법에…… 사실 이 법 자체도 다른 법에 비하면 이례적이잖아요. ‘국가는 그 지역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서 당연히 국가가 먼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 안산사에서 여섯 가지를 국토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전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라 또는 다른 절차를 밟아라, 다른 근거규정을 확보해라 등등의. 그러면 이 특별법을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이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국토부에 기왕에 제출도 돼 있고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일반적인 다른 일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혀 안 맞지요. 이 특별법의 취지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전해철 위원** 그런 면에서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조금은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이춘석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2소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상민**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37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요.

우리 법사위의 지금까지 관례가, 제명이 같은 하나의 법안을 동일한 회기 내에 중복심사 할 수 없다는 법사위의 관례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항상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빨리 통과될 법이 있고 늦게 통과될 법이 있으면 가끔 순서를 바꿔서, 이 법은 이번에 통과를 못 하는 겁니다. 다른 법이 오게 되면 다른 법이 통과가 되고 이 법은 스테이 됐다가 다음 회기에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법사위에서 관례적으로 그런 경우에 허용하는 경우가 상임위의 요청이 있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의 요청이.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은 늦게 가도 된다는 건데, 이 경우는 상임위의 요청이 아니라 국토부 요청에 의합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가 순서를 정해서 법안을 보내게 되는데 상임위의 요청이 아니라 그냥 국토부의 요청에 의하면, 사실은 집행기관인 국토부가 이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 법 통과시키고 싶으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례상으로 허용하는 것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만일 이한성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이게 상임위의 우선순위상 이 법이 늦게 가고 그 법이 먼저 간다고 하면 상임위의 요청이 있어야지, 저는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관례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저는 국토부장관님한테 요청받으
게 아니고……

이춘석 위원님, 제가 주장까지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봤던 건
데, 국토부장관님 요청이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
이 요청한 것을 전해철 위원님 대신해서 제가 사
정을 상의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
다.

○**전해철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위원장님, 제가……

○**전해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님
이야기도 일응 맞으니까 국토위에 위원장 내지
여야 간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통
과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적은 맞는 것 같아요.

○**이춘석 위원** 전체회의에 놔둬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관례를 일단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한
다고 생각해요. 상임위의 요청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야지, 상임위의 요청이 아닌 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스테이가 시작하면 국회의 법안 순서가
다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게 하지요. 일단 이것은 그
냥 전체회의에 놔두고……

○**홍일표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홍일표 위원** 마이크 전기가 늦게 들어오네.

○**위원장 이상민** 홍일표 위원님 좌석은 늘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일 때도 그렇고.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위원장 이상민** 충청도라 그런 건지.

(웃음소리)

○**홍일표 위원** 그런 문제는 일반론인데, 형식은
일단 우리 법사위원의 요청이라고 봐야 되지 않
을까요? 이한성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춘석 위원** 법안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
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홍일표 위원** 국토부장관은 의견 제시만 했고.

그러나 어차피 법사위는 여러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2소위에서 좀 기다렸
다가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번 사안은
국토부장관의 의사만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2소위에 가든가 전
체회의에 계류하든가 그래도 다 좋지 않은가 싶
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놔두고 그
것을 합의를 하도록……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제가 볼 때는 좀……

어쨌든 지금 말씀들 다 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대주택법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31조 보시면, 원래 상한선은 법률에
서 정하고 시행령이나 부령에서는 그 범위 내에
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취지는 그겁니다. 위임입
법의 한계를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특별수
선충당금의 효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건축비의 1만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그
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 상한선
을 정하는 격이 됐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그 범
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하위
법에 또 시행령에 정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
서 저는 2소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말고도. 한번 검토를 2소위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법도 78조를 보시면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형
사처벌을.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상 차종이라든가 대상 도로라든가 예컨대 차로
의 이용 방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대강의 기준
을 법률에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그냥 전면,
전부 위임을 했어요. 이것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소위에서 법리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옳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위원장은 원래 옳은 얘기만 합
니다.

○**임내현 위원** 위원장께서 아주 정확하게……

저 발언권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아니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행정
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위법에,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을 하는 것도 그것은 법
에 지극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구체
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별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불가

피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 보고요. 앞으로 저희들 논의할 때 제 의견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검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저도 언뜻 그렇게 느껴져서 2소위에서 법리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위원장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못 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은 법률에서 아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완전히 그대로 위임해 버린 것을 포괄적 위임이라고 그래서 이게 위헌적인 법률이다 하는데, 여기에다가 더 문제는 그보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는 대통령령보다 더 하위인데 거기서 정하면서 더 하위에서 정한 것의 1만분의 1, 이것은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네요. 다시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민** 법안 다듬으면서…… 제안할 때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2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석하신 장관님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이십니다, 처음에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8항·29항·30항·3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1항·35항·38항의 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3항·34항·36항·37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듬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잠깐만, 하나만 여쭙 볼게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세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장관님, 혹시 거기 교통실장이나 교통 담당하시는 국장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철도국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철도국장입니다.

○**박지원 위원** 철도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장관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KTX 호남선 개선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호남선 개통돼서 KTX 승객 관계 좀 파악해 보셨어요, 승객이 어떻게 되는지?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때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원래 당초 예측했던 수치보다도……

○**박지원 위원** 얼마나 더 높아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약 8%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8%.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하루에 평균 1361명이 입석을 이용합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면 개선시켜야지요. 어떻게 개선시킬 거예요? 증차 같은 것……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지금 입석 문제에 대해서는 피크타임 때 사실 좌석 공급이 일정한 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입석 같은 것들이 과다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도운영기관을 계속 감독하고, 아울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수서발 KTX가 개통이 되면 상당한 증편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선로 용량이나 차량의 여유 이런 것들을 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운행계획이 수립되도록 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지금 메르스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쪽 남도 여름휴가 기간인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수서 개통되기 이전이라도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손병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주 오세요.

3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이춘석·최민희·유인태·도종환·노웅래·백재현·김성곤·배재정·이학영 의원 발의)

4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49.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이상민 안행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9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0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42항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항 지방공기업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45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 등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 법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사업 내용에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협력사업으로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인용이 잘못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 제8조제6항제1호 단서조항을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도로명으로 재환원하는 경우’에서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로 입법취지에 맞게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외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

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하고,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와 일정한 비위행위의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영개선명령 불이행 등으로 해임된 사람은 3년간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시효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60조제1항과 안 제63조의5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을 이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요건을 강화하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동 법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 제2조의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인데 지역개발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안 제4조제1항 단서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 양자가 불일치하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여구역 내 시설을 계속해서 활용하기를 희망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이를 제거하지 않고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의 대학 이전 특례조항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대학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및 지역 상권 침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대학 등의 입법과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정으로 인해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현재 수도권 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지역대학의 신뢰보호 측면과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서해 5도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권,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안 제40조제9항은 동 법이 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천분야 검사기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며 온천에의 출입 검사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온천의 대물적 허가 성격을 고려할 때 출입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충실한 법치행정을 위하여 현행 조항을 유지하도록 수정하고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안건 44번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80조의2항을 보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공단으로, 공단을 공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법 등 여타의 법체계를 보면 공단과 공사의 법적 지위와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맘대로 바꾸게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행자부가 공사·공단 전환 시에 상법상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청산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편법을 써서 이 법을 가지고서 공사와 공단을 맘대로 바꿔 버리게 하는 것은 향후에 국가공단이나 공사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하면 같히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다시 검토가 필요하고요.

○**위원장 이상민** 2소위 회부 건인가요?

○**이춘석 위원** 또 안 제58조제5항제2호는 사장의 해임 사유도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소위에 회부해서 한번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노철래 위원** 다음에 저……

○**위원장 이상민**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노철래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님.

46번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 혹시 안행위에서 법안 검토될 때 지적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특별히보다도 아마 수도권·비수도권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노철래 위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순히 그렇게 나누는 문제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대학의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주 내용이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에 한하여 이전·증설이 가능토록 개정해 지방대의 수도권 진입을 차단하려는 것이지요? 맞아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지방대학이 수도권 내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낙후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개정 취지와 개정안에 명시된 부분하고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수석전문위원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안행위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속기록에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 문제가 아니고 중앙의 행정부처 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경기 북부의 교육 여건 피해를 입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공여구역 소재 지역과 지방대학 소재 지역 간의 의견이 상반되고 지방대학들의 개정안 반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의견 개진을 했고, 행정자치부는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개 부처 다가 각각의 의견 개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행위 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면서 관계부처 간의 이견된 의견을 전혀 조정을 안 하고…… 그 내용을 또 보니까, 의견 조정이 안 되니까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에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행위 소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법사위로 일방적으로 올려놓는 경위가 됐는지, 안행위 법안심사가 법사위로 떠넘기는 것 같은 아주 우려스러운 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당 법안을 안행위로 반려하든지 아니면 2소위로 넘겨서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하시는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안행위에서도 각 부처마다 의견을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교육부에서 낸 의견은 그 부처 소관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고, 그런데 이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에서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결정적으로 저희들 의견에 반대한 것은 거의 없고요. 특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단순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크게 보면 또 수도권·비수도권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요소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위에서는 심의가 부족했다든지 부

처 간의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왜 안 들어와요?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1분 더 드리세요.

○**노철래 위원** 이 부분이 속기록에 뭐라고 표현돼 있느냐 하면, 소위원장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우리 안행위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맥이 있어서 법사위로 넘겨서 다루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루게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모든 법이 입장이 곤란하고 이해가 상충되면 무조건 법사위로 올리자, 이런 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안행위로 반력을 하든지 2소위로 넘겨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임내현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상반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임내현 위원** 이에 관한 것만 하는 건가요?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것은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전해철 위원** 이 건 이야기할게요.

46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이 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노철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해당 상임위가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여지 주민 내지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특별법의 취지가 몰각된다라는 것에 여러 위원들이나 관계부처의 문제 제기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과 더 토론을 하는 것보다 2소위로 가서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냥 놔두셔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나 또 부처 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지만 조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을. 그러니까 가능성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전하고 있는 대학들의 상황 또 진전 정도 그리고 실태 등을 보면 어느 정도의 대안 마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안행위에서 이야기하고 행자부장관께서 주무장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부나…… 또 사실은 국방부 같은 경우가 완곡하지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의 의견 등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2소위에서 정리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대표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박지원 위원** 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도권 발전 규제를 하느냐, 풀어 버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수도권 규제를 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발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은 공동화돼 가는 겁니다. 결국 수도권도 환경이나 교통 등 문제가 생길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수도권은 배 터져서,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법만 하더라도 수도권 의원들은 대개 찬성을 하고 지방 출신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지방 출신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해철 간사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사항을 보면 어떠한 대학들은 이미 심지어 공사까지 시작한, 계약이 완료된 대학들도 있고 이제 막 옮기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소위에 가서 법안을 잘 만들면 서로 윈윈 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계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시고 다음……

저도 지역을 대변하니까 대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면 느끼는 지역의 체감도가,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사나 충남, 대전시장 다들 저한테 법사위에서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요망을 아주 간절히 전달해 왔거든요.

그리고 국토 전체의 취지에 볼 때 수도권에서

는 잘 느끼지 못하는 궁핍감이 지방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두 축으로 해서 지역에 역동성을 불어 넣어 주려면 이런 것들에서 타격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장관님은 어떠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큰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미 시작된 현실에 있어 가지고 개별적인 문제에서 보면 다소간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면 저의 입장에서 조정해서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찬반보다도 윈윈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도 좋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냥 미뤄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안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아까 먼저 하신 분이, 임내현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서영교 위원** 이 법안에 관해서……

○**위원장 이상민** 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지금 말씀처럼 저희는 한 명인데 양쪽이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먼저 든 쪽은 지방 쪽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방대학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일정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이라서 과잉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말씀처럼 당장 경기도에서는 공여지나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법사위가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살리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래서 2소위 얘기를 하는데 우선 그래도 안 된다, 고쳐야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회의에 놓고, 그래서 안행위에서 했던 내용

들을 조정해 가지고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중간에 가지고 가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게 낫지 2소위로 가면 사실 언제 다른 법에 의해서 다시 될지 모르니 수도권·경기도권 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여 고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자는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뭐……

○**서영교 위원** 그러면 좀 더 빨리 해결하고 양쪽도 빨리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철래 위원** 제가 첨언해서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민** 이 건에 대해서요?

○**노철래 위원** 예, 이 건이지요.

저는 전체회의에 나 가지고는 오히려 더 집약돼 가지고 생산적인 안을 도출하기에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위로……

저는 원래는 안행위로 회부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왜? 거기에서 의견 조율도 안 된 걸 올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양보한다면 2소위로 넘겨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제기하고 저는……

○**위원장 이상민** 노철래 위원님은 충청도 출신 아니세요? 아는 분도 많으실 텐데……

○**노철래 위원**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태생이.

○**노철래 위원** 그래서 저는 안행위로 회부를 하든지 아니면 2소위에 넘겨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전해철 위원** 조정안을 만들려면 2소위가 낫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계속 이것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냥 2소위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노철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상민** 이것 2소위 가서 마냥 묵히는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희 법사위 보고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월권한다, 왜 붙잡냐, 뭉개고 있냐’ 이러는데 지금 붙잡아달라는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또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왜 법사위에서 월권하고 붙잡느냐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법사위가 붙잡아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안 하게끔 각 상

임위에서 잘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하여간 절절하게 충청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절절하게 이야기를 해서……

○노철래 위원 아니, 저도 그것 받고 있어. 받고 있는데……

○서영교 위원 절절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오늘은 충분히 양쪽 걸 다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저는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해야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원래 상임위를 통과되어서 왔는데 노철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하시지요.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되 간사님 두 분이 행자부하고 관련 상임위하고 의논하셔서 타협안을 통과시키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볼 때 효과는 비슷비슷한데……

○이한성 위원 2소위 가서 하시지요.

○노철래 위원 2소위로 해요. 우리가 2소위를 해야 타협안이 나오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2소위 의견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2소위로 가는 게 우리 관례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민 관례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는데……

○전해철 위원 통과하나 안 하나면 전체회의에 있는 게 맞는데……

○홍일표 위원 위원장님, 2소위 간다고 계속 묵히는 것 아니에요.

○전해철 위원 안을 짜는 것은 2소위가 낫다니까.

○위원장 이상민 묵히는 게 너무 많아요. 산재 보험법부터 시작해서……

○서영교 위원 2소위 가서 묵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요. 2소위 가서 묵혀지는 게 너무 많아.

○전해철 위원 2소위로 해요.

○노철래 위원 2소위로 넘깁시다.

○서영교 위원 절절한 사람들의 의견도 하여간 잘 반영을 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제가 여기서 공언을 하겠습니다. 2소위에서 묵혀 있는 건 전체회의로 다시 회부시켜서 표결을 하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법사위원장이 욕은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걸로 해서.

○노철래 위원 안 먹게끔 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이것은 1개월 내에 타협 가능하지요? 6월 달 내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지요, 6월 국회에서.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2소위에 묵혀 있는 다른 것들도 상임위 통과된 거면 통과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보안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전해철 위원 6월 시한을 정하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했듯이 대안을 만들어서 가능한 조속하게 통과되게 하십시오.

○노철래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민 그 조속한 것이 하여튼 권고적으로 6월 국회에 되도록 이렇게 하지요.

다른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회법이 이번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법률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그걸 제대로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장관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부는.

5·18 7차 보상법,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앞의 부분은 나중에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611명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구속이 됐는데 과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누락이 된 게 나타나 가지고 어렵게 법안 통과가 됐는데 당초에 기재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다가 행자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또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 그러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법에 있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과거에 분류가 됐던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재분류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이번에 시행령에다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기재부는 반론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아까 국회법의 정신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 줬으면 시행령을 거기다 맞춰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의연한 자세로,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와 같이 시행령이 법률을 안 따라준 데서 생기는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마당에 장관께서 이것도 법에 있는 것이니까, 또 기왕에 행자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임내현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걸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만 그냥 하고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면 제가 후속으로 주장을 할 때 쓰려고 합니다.

43항 지방세법 관련해 가지고 면세담배에 관해서 일부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지난 60여 년간 열악한 노동환경과 각종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 왔는데 그 처우개선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한 달에 네 보루의 면세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라는 정부의 책무를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 안이 지금 국내 면세담배 불법유통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 문제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은 정리가 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와 관련되어서 종전에 있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이익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법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은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내현 위원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홍일표 위원님 하실 건가요?

○홍일표 위원 39번……

○이한성 위원 이제 다른 안건 이야기합니까? 다른 의사일정?

○위원장 이상민 다른 법안들, 49항까지 법안 중에.

○이한성 위원 다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의사일정 39항은 여야 간에 아마 논의가 더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소위로 보내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행자부장관님, 이걸 법안 개정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꺾어보면 불편해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외국인들은 읽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윗배다리길’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윗배다리길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중에는 ‘로(路)’자밖에 없어요, 로. 길을 가르키는 게 ‘로’자밖에 없습니까? 길도(道), 길로(路), 길가(街), 길통(洞), 수없이 많은 걸 갖다가 적당히 읽기 쉽게, 발음하기 쉽게 고쳐줘야 하는데 ‘ㄱ’ 발음이 들어가든가 ‘ㄴ’ 발음이 들어간 뒤에 ‘로’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아주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로’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미국에는 보면 스트리트(street), 에비뉴(avenue), 로드(road), 서클(circle), 플레이스(place), 웨이(way), 버로우(burrow) 이렇게 수없이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에는, 우리는 늘 밤낮으로 발음을 해 왔으니까 쉽겠지만 외국 사람들이 무슨 윗배다리길, 엄청 어렵게 해 가지고 그걸 그냥 알파벳으로 잔뜩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도대체 절절 매고 도저히 국제화에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회의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구글에 지번이 다 뜨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다 뜨기 때문에 불필요성이라든지 회의론이 많고 거기에다가 시골에 가면 동 이름을 정하는데 이 동네가 고유동이 다 없어지고 그냥 무슨 가로명으로 해 가지고, 숫자로 해 가지고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우선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양한, 꺾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39항은 2소위로 넘기는 건가요?

○**전해철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말씀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39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요. 당시 안행위에서 논의할 때 장관께서 어땠습니까? 이게 충분히 논의 안 됐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지방 의원들의 많은 요구 또 지속적인 사회적인 이슈 제기가 있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수년 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장관께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러한 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봤고, 지금 안행위에서 검토가 되어 있는 이 안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논의를 좀 더 하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께서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법사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다 생각하고요.

안행위 부대의견에 보면 그런 우려를,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지방의원 개인비서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지 않도록 제도적 설계를 잘하자고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마련하자 등등의 우려를 상당히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만 달리 여야의 합의를 기대하거나 또 말기는 것도 제가 보면 특별하게 기구나 장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한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전체회의에 그냥 놔둬서, 이걸 2소위에서 수정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놔뒀다가 좀 검토해서 가지고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건과 관련해서인가요?

○**홍일표 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소위에 회부해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이 법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야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제대로 승계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으로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다 밝히진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특정 요구에 의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다는 건데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또 재원이라든가 이것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기재부로부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정부도 단계적으로 그걸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조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그렇게 하시지요, 전 간사님.

○**전해철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에게 보좌진이 있음으로써 일을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내는 일은 보좌진들이 다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보좌진이 1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해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의원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되게 큰살림을 하고 엄청나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시 공무원이나 구 공무원을 뽑는 것보다는 시의원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도와줄 전문위원을 1명씩만 뽑는다면 제가 보기에 서울시의 구 공무원을 뽑는 것보다 한 서너 배의 효과가 따른다, 그렇다면 재정 문제도 기재부랑 더 상의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에 이 전문위원을 뽑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국회의원은 9명으로도 모자라서 지역사무실에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갑작스러워서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저희들과 시의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들에게 전문

적 정책자문을 해 줄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다른 인력의 서너 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면 재정적 절감 그다음에 능력적 절감 그리고 광역이 달라지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는 안행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여야 간에 이야기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잡고 더 논의하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2소위로 가서 한 사람이 잡으면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개 소모적인 논의가 참 많아서 저는 그것보다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같은 말씀 아닌가요?

○전해철 위원 짧게 할게요.

제가 확인하니, 홍일표 위원님, 지금 굉장히 멀리 갔네요. 당시 여야 대표 간에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법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법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상임위에 이렇게저렇게 지장이 되니까 그때를 좀 넘겨서 다음에 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6월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합의문을 썼어요.

○전해철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방금 서영교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오늘 통과야 이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년간 노력했던 결실이었고 이것의 취지가 그런 면만 볼 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떤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공감대도 됐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소위 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정의 여지가 있거나 조정을 한다면 2소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을 제가 절대 반대하지 않는데—제가 위원장인데……—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 안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대표단이나 간사간 협의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에 놓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나니까요 여기 놓고 그 취지를 잘 반영하도록 할게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참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우

리가 법사위 특히 타위법을 하면서 소위에 보내자라는 의견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여태까지 웬만하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에 보내자고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럴 때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관례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고요.

○김도읍 위원 예, 위원장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사실 법사위 지금 3년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2소위에 상당부분 묵혀져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합리적으로 무슨 반대를 하고 논거를 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한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사위의 전통이 다수결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아무런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그동안 해 왔던 것에 약간 수정한 겁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2소위로 가서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에 내용의 수정이 아니라 그러면 전체위에 계류를 해 놓고 조정과 타협도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김도읍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쌓여 왔던 발로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하세요.

○노철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이 건에 대해서?

○노철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노철래 위원님.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느냐, 2소위에 회부하느냐? 그런데 효과는 전체위에 해도 합의가 안 되면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노철래 위원 물론이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아니, 한 말씀 드릴게요.

2소위에 회부하는 것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것 같은데 저는 무능해서 그런지 법사위를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2소위에서 심의·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나 관계 실무자들에게 충분한 자료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지연이 되고 계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소위원한테 납득될 수 있고 확실하게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온 것은 저는 안 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 너무 많아요.

○노철래 위원 글썄,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저 스스로도 납득을 못 하고 있다가. 그래서 자료가 미진해 가지고 그것을 요청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게 무조건 시간 끌기 위해서, 안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2소위에 회부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과 깊이는 훨씬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소위로 넘겨서 더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결론을 내기 전에 장관님, 이게 추산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보좌관제도 이 법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보좌관제도요?

○위원장 이상민 예, 그것에 한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지금 그게 172억 원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 부담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각 지자체가 안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인가요, 각 지자체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통상적인 방법대로 하는……

○위원장 이상민 각 지자체의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심의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지자체 시·도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너무 급박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자체는 좀 신중 의견이군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준비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그랬습니다.

○노철래 위원 참고로 예산 문제 자료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달라서……

○위원장 이상민 어디서 나온 예산 추산……

○노철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정책처하고 안행위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건데 정책자문인력을 시·도의원에게 지원할 경우 347억이 들어가고 시·군·구의원에게까지 지원할 경우 99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172억 원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것이 지금 인턴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인턴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인턴 기준으로.

○노철래 위원 이왕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줘야지 인턴 기준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도의원한테 인턴 수준의 직원을 줘서 어떤 효율적인 정책자문이, 정책이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검토해서 사실에 근거한 숫자를 내요.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하시지요.

○전해철 위원 사실만 하나 확인할게요.

노철래 위원님, 그게 이야기가 안행위 부대의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대의견을 보시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공무원이 아닌 인턴직원을 채용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 후에 그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이 부대 조건 때문에 인턴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해 보고 나서 검토하자라는 안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제가 논의를 촉발시킨 원인제공을 하게 됐는데, 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노철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지금 어차피 장관께서 계속 계셔야 될 상황이니깐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 39항은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그 사이에 간사

님들 사이에 의논을 하시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있잖아요, 개정안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위원님들 고치기 어려…… 58조입니다. 해임 사유인데 2호에 ‘그밖에 업무수행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하면 될 일인데, 그러면 곧바로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법령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고 부가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논의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면 곧바로 그 흠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거고 또 통상적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한데 거기에 왜 명백하고 중대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했는지, 그래서 이걸 2소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전해철 위원 아까 2소위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의할 때……

○전해철 위원 아까 이춘석 위원이 얘기해서……

○위원장 이상민 이춘석 위원이 그 점을 이야기했나? 다른 것 했어요, 다른 것.

○이한성 위원 내용이 달라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법안은 같은데 지적사항이.

그래서 40항, 43항, 4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44항, 46항은 2소위로 넘기고 그리고 39항은 결정을 보류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노철래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위원장 이상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겁니다. 40항, 43항, 4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1항, 42항, 45항, 48항, 49항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4항, 46항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완을 위해서 소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9항은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결정토록 보류를 하겠습니다.

잠시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5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김광진·박기춘·윤호중·정세균·한명숙·이미경·강동원·설훈·김윤덕·김영주·안규백·김관영·진선미 의원 발의)

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노용래·박민수·박남춘·부좌현·이개호·이종걸·임수경·주승용·추미애 의원 발의)

5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부좌현·박주선·정성호·박민수·김영록·김광진·강기정·박남춘·진선미·김우남 의원 발의)

5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이개호·정청래·이목희·박남춘·김광진·조정식·박민수·정호준·강기정 의원 발의)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강기정·김영록·부좌현·주승용·유성엽·박민수·김성곤·전해철 의원 발의)

55.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김종태·장윤석·황인자·박명재·서상기·홍지만·윤재옥·강은희·이완영·권은희 의원 발의)

5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강석호·이철우·이노근·염동열·박인숙·김용태·신의진·김재경·이재영·윤진식·김정록 의원 발의)

5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우남·이윤석·김영환·강기정·강창일·최규성·김성곤·김광진 의원 발의)

- 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5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6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 행정위원장 제출)
-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 정위원장 제출)
- 62.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6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 위원장 제출)
- 6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 정위원장 제출)
- 6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66.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 전행정위원장 제출)
- 6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 장 제출)
- 6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 정위원장 제출)
- 6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시14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0항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1항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52항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재해경 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53항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저수 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54항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자연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55항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56항 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재해위험 개 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 57항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 58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항 총포·도검·화약 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항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항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64항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65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66항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항 소방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69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0건의 법률안을 일 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69항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 량, 세천, 취입보 등을 ‘소규모 공공시설’로 정의 하여 이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 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대한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관리청이 아닌 자가 소규모 공공시 설 공사를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문장 및 자구를 정리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등산로 등을 포함함으로써 동 장소의 보 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범지역 등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영상정보처리 기 및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된 규 정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문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9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과자의 총포 등의 소 지허가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 며,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

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6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난폭운전에 대한 정의 및 이를 금지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및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조문 중 생략하여 표시한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작전전경제도 폐지에 따라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 및 용어를 변경하며, 의무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법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반복되는 문구를 정리하여 문장을 다듬은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비협회가 하는 공제사업에 입찰보증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되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 24조제4항의 문장 순서를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제명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고,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각각 가중처벌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6쪽 중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소방시설공사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완화하고 소방감리업자가 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 제17조제1항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타법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 제9조의2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8쪽 아래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관할 관청이 유·도선 승객의 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도선 승객에 대하여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유·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안전을 위하여 유·도선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4항, 그리고 제56항과 57항, 제60항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중섭 행정자치부장관님, 그리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님, 강신명 경찰청장님 출석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국민안전처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김도읍 위원** 의사일정 제69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요, 이게 유선·도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법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낚시배를 포함해서 유·도선이 지금 한 2000척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올해 가능하면 빨리 법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김진태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유·도선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하고 지자체의 역할 분담 원칙에도 반하는 것 같고, 유·도선 면허권자가 지자체 아닙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도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육상 교통인 버스 교통을 보더라도 지방에 있는 시내 버스 지원은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개정안의 36조 국가가 지원하는 것, 이것은 빼고 나

머지 국민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바로 통과시키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자체의 관장 업무인데 김진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로 지방재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섬 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유·도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00척 되는데 그중에서 164척이 도선입니다. 도선은 섬에서 섬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지난번에 이 법안이 상정됐다가 사정 때문에 오늘로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김진태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선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으로 하면서 유·도선에 대해서 정부 입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 신조하는 도선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의원님께서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여기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빼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사실은 도선도 중요하지만 유선도 여기 다 관련되기 때문에, 2000척에서 164척 빼면 유선이 한 1800 가까이 되는데 김 의원님이 발의하신 데는 유·도선의 야간운항기준, 그다음에 승선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 또 유·도선 안전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사항이 여기에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름 성수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낚시라든지 관광을 하실 텐데 이것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 지원은 다른 저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삭제를 하시고 이 법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강신명** 예.

○**김도읍 위원** 우리가 기초질서에 대해서는 경찰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강신명**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제가 참 국회의원이기 이

전에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지방경찰청, 청장님께서 격려 좀 해 주십사……

이번에 대대적으로 ‘교통질서 나부터 먼저’ 운동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범시민운동으로 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전국적으로 전파해야 될 캠페인이 아닌가, 그만큼 시민운동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 직원들이 노고를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강신명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부산지방경찰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부산의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청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경찰청장 강신명 예, 감사합니다. 격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69항 유·도선법은 발의한 김진태 의원하고도 의논이 됐는데요 36조 국가가 보조하는 것, 이 조항은 빼고 다른 의원 여러분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또 안전상 시급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노철래 위원 동의합니다.

○전해철 위원 해당 상임위에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김도읍 위원 발의한 김진태 의원님한테……

○위원장 이상민 69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거기의 무엇을 삭제하자는 뜻인가요, 어떤 부분을?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냈는데 36조는 김진태 의원만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도 이 부분은, 자기가 봐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안 맞겠다, 삭제했다고 지금……

○위원장 이상민 개정안의 39조?

○김도읍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하자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 예, 빼고.

○노철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정갑윤 위원 장관님께서 동의했으니까……

○전해철 위원 괜찮아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전 위원님,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정부 입안으로 그 법을, 세월호 사고 이후에 유·도선에 대한 안전규정 관련해서 정부 입법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선 164척에 대해서 신조할 때는 국고를 지원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 안 돼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개정안의 39조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36조입니다, 36조.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69항 안전에 대해서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의 3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도읍 위원 제외하고.

○위원장 이상민 예.

또 다른 질의나 토론……

○서영교 위원 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국민안전처 장관님.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서영교 위원 지금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범정부 메르스대책 지원본부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메르스는 어떻게 읍는 겁니까? 가까이 있어서 침이 튀겨야 읍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읍는 거길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서 위원님, 저희 국민안전처는 저를 포함해서 의학이라든지 질병 역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 질병, 환자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참고적으로 비말성, 저도 비말성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침이나 이런 걸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공기 중으로는 전염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공기 중으로는 전염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문고리 이런 것 만졌다가 전염 뭐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하여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것도 잘 안 하는데 남의 것은 터치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너무 엄격해서……

사실 깜짝 놀란 것은 삼성병원에서 숨긴 줄 알았더니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 사람 검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검사를 안 해 준 거잖아요, 처음에. 알고 계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는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질병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답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는 뭘 해 주는 거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 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영교 위원** 문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요.

○**서영교 위원** 예를 들면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문자 보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재난문자라는 것을 받을 때 참 아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보니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DMB시스템하고 CBS시스템이 있는데 DMB시스템은 장차관이라든지 기초단체장까지 다 저희들이 1000자를 보낼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보냈는데, CBS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뭐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부장이시니까……

뭐냐 하면 문자를 딱 받았는데 기분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열어 보니까 손 씻고 뭐 하고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보건소로 전화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로 전화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가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중동 갔다 온 지 14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아니면 확진환자라고 얘기되는 사람과 한 2m 내에 있었거나……

그런데 열이 난다 그러면 우선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보건소에서 그것 판단해 가지고 검사를 하러 오라든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서울시는 번호가 이거고 중랑구는 이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이거다라고 딱 짜서 보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기오염은 아니겠지, 지역오염은 아니겠지……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아, 열이 그냥 무작정 난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중동이라도 한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확진 환자와 가까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라도 보건소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재난본부에서 보낸 문자는 손 씻어라,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은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있었던 말이에요.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잠복기가 14일인 건지, 그러면 14일이 아니기 전까지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열도 안 나고 있었는데 발견이 됐어요. 어머니 문병 갔다 왔는데 어머니는 멀쩡한데 아들이 어머니 집에 격리되어 있다가 발병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타고 다닌 지하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아들이 열이 나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은 아닌데요,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이비인후과는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빨리 움직여야지 되고 다른 데의 상황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빨리 봐야지 되고. 이게 제가 보기에 는 공기 중도 있는 것 아닐까,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것은 아닐까……

중환자 할머니가 1번 환자로부터 환자 병실에서 오염이 됐거든요. 전염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계시면서 그게 뿜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중환자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 뭔가 다른 것을 좀 봐야지 돼서 제가 보기에 국민안전처에서는 보건적인 것도 있지만, 보니까 ‘우리는 그다음 것을 받쳐 줍니다’라고 하지만 우선 핵심 관계자 분들이니까 받쳐 주다 보면 다른 데서 다른 형태로 오는 게 있나 보다, 그것을 가지고 같이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저희들의 지원 부분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상황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조치할 사항을 정하는 데 근거를 제시

하고 그렇게 취한 조치가 과연 합당하나 제대로 돼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대책본부에서 근무는 무난하게 잘 수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무난하게 잘 수행이 되는데 가게들은 다 장사가 안 되고요, 뜬금없는 데서 확진 환자가 나오거든요, 뜬금없는 데서. 그리고 집에 있다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아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면서……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좀 더 조치를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국민안전처하고 종합대책본부에서는 극진의 마음으로 국민들만 생각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어떤 것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저희 방으로 직원 통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지역으로 알려줄 게 있는지, 적극 조치를 취할 게 있는지 전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위원님 방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경찰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에 광주U대회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축제인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 광주 경찰에서는 U대회 기획단도 만들고 전담 경비대도 발족을 시켰고 경비와 안전,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압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국회에서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광주 경찰이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으니까 경찰청장께서 더 격려하면서 만전을 다하도록 치하와 독려를 더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경찰청장 강신명 광주 경찰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또 격려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가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행자부장관님 소관인가요?

○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 소관 법률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개인정보에도 관련되는데, 물론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일정 부분 제지를 가하는 것은 맞는데, 풍속업자 단속으로 해서 얻은 자료를 본래 목적이 아니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이게 적절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제동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법이 맞는지 저도 확신이 없는데 2소위에서 검토를…… 그쪽 측면에서 이렇게 본래 목적에서 얻어진 자료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 저축 문제를 한번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 강신명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게 51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0항, 52항, 53항, 54항, 56항, 57항, 6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항, 58항, 59항, 61항, 62항, 63항, 64항, 65항, 66항, 67항, 68항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69항은 아까 김도읍 위원께서 지적한 안의 3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1항은 법리적 검토를 위해서 2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해철 위원 39항은……

○위원장 이상민 아까 39항하고 또 84항, 86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39항은 어떻게 할까요?

○이한성 위원 2소위로……

○위원장 이상민 세 분과 관계 공무원 분은 퇴

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필요해요?

○김도읍 위원 지방자치법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아, 지방자치법.

39항은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저분들은 돌아가셔도 되지요.

○전해철 위원 의결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상민 이게 결론이 안 나면, 2소위로 가자 뭐 이렇게 안 되면 결론은 다음에 내는 것으로 하고 전체회의에 두지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시지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해 오던 관례대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아까 저보고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해 놓고서……

○김도읍 위원 관례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관례는 제 마음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끝내는 게 아니고 2소위로 갈 것인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84항, 86항은 어떻게 할까요?

○전해철 위원 그것은 전체회의에 두시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39항, 84항, 86항은 전체회의 하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결이 필요 없는 것이고……

세 청장님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7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이개호·유대운·정청래·부좌현·김성곤·우원식·최민희·박민수·김기준·김광진·전해철 의원 발의)

7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승남·강동원·진성준·이찬열·박민수·송영근·김현미·윤후덕·백군기·김광진 의원 발의)

(17시42분)

○위원장 이상민 국방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0항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1항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국방부 백승주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한민구 장관께서는 지금 국방위가 열려서 거기서 현안 답변을 하는 관계로 차관께서 대리출석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과 71항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군인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제71항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과 시중 군장점에서 유사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피아식별띠를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의 검토 결과 각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상민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7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갑윤 위원 현안질의 하나만……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만약에 중공군이 개입 안 했다면 6·25가 빨리 끝났겠어요, 더 늦어졌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격했던 그 상황에서 종료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정갑윤 위원 그리고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게 된 결정은 아마 우리가 알기로 모택동이 결정했다고 보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어떻게 모택동을 한국 국민이 볼 때는 그렇게 선호할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국민들 정서가.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분명히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적 진영의 사령관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정갑윤 위원 마침 법안이 올라왔던데 바뀐 분 있어서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월 19일 날 방위사업청 SNS에 올라온 것 혹시 보셨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저는 못 봤습니다.

○정갑윤 위원 ‘오늘의 팔방미인-마오쩌둥’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시비하니까 두 시간 만에 내려갔어요.

정말 방위사업청이 이래도 되나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아무리 이분이 명언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아니다, 만약에 김일성이 명언…… 김일성도 북한에서 보면 엄청난 명언 많이 표현했어요. 그렇다고 김일성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일본 A급 전범들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제가 정부기관이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위원장 이상민 군대 내에서 폭력 사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등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구속까지 됐던 중대 사안인데 군사재판에서 무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또 그전에 사단장이 긴급 구속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은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나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사단장은 6개월 실형을 받

았고요, 그리고 여단장 사건은 구속해서 수사 중인데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무죄 사유가 뭔가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인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증거 불충분보다 재판관들의 판단은 합의에 의한 관계로, 1차 재판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강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렇게 한 건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나 여러 가지 진행된 대화 내용 이것을 보고 판단했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군검찰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구속까지 될 정도로……

○국방부차관 백승주 군검찰은 성폭력으로 기소했고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군대라는 특수조직사회이고 폐쇄적이고 또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규율되어 있고 그런 특수성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제성 여부를 따질 때.

○국방부차관 백승주 위원장님, 해당되는 당사자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재판 전문을 갖고 와서 필요하신 분에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내용을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왜 그런 재판 판결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판결 요지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검찰이 항소하기는 했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저는 항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장 이상민 당연히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구속까지 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군검찰은 재판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이와 곁들여서 군 사법 개혁이 법사위에도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심의나 이런 권한이 없는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 때문에 지척거리고 있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법사위에 제출된 8개의 군사법개혁 관련 법률과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리

고 국방부가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으로……

○위원장 이상민 했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위원장 이상민 언제 했습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정부입법으로 제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법제처라든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조율하고 있는데 그 법률안은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자꾸 능장 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몇 번 약속을 드렸었는데 의견 조율되는 대로……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 법안 아직 법제처를 통하지 않은, 거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안이 있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걸 저를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방부가 거기에 결연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결연한 의지를 갖고 바꿔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여기에 나머지 법안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법사위에 있는 모든 타 상위 법안을 다 상정시켰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오늘 한 80여 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고요. 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들, 또 속기사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김도읍	김진태	노철래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우윤근	이상민
이춘석	이한성	임내현	전해철
정갑윤	홍일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	심태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국방부차관	백승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인홍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도로국장	김일평
철도국장	손병석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조달청장	김상규
경찰청장	강신명
산림청장	신원섭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금융위원장	임종룡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